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28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 송옥주·백승아·서삼석

민병덕 • 이원택 • 한정애

박 정ㆍ이수진ㆍ한민수

이병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에 관하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구성원에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에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등 다수로 되어있고,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이 10여명이 추가될 수 있어(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관철되거나 큰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우며,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6항) 사실상 이전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무시될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군 공항 이전사업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중도페지 내지 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반대로 군 공항 이전사업이

무산될 소지가 매우 높음.

이처럼 특별법에서 간과되고 있는 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 심의에 앞서 예비이 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안 제5조제2항)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향후 군 공항 이전 중도 폐지 내지 사업 무산에 따른 막대한 시간적·재정 적 낭비와 불합리를 방지하고자 함.

또한 특별법상 "협의"의 개념이 관계자 간 논의로만 그치는 것인지 의견일치를 본다는 것인지 해석이 애매하여 이전사업 추진 시 혼선이 발생되므로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법상 협의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안 제4조, 제11조), 이전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기까지 국방부장관이 종전부지 또는 이전부지 어느 한쪽을 편향되게끔 이전사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투명 등 그 내용이 추상적이므로 헌법상 법치주의나 행정법상 비례원칙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려운 선언적 규정으로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안 제8조) 종전부지・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평등한 지위보장과 헌법에서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에 입각한 사업진행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4조, 제5조, 제8조, 제11조).

법률 제 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협의하고"를 "협의하되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동의를 받아"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전후보지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는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 단체장의 협의결과 또는 유치동의 의견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 중 "한다"를 "하며, 종전부지 또는 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 와 협의 시 상호간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합의에 의하여 이전부지 를 선정하도록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협의"를 "합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공항 이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제4조(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③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경	
우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u>협의하고</u> 선정 결과를 통	협의하되 예비이전후보지
보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이전후보지의 선정) (생	제5조(이전후보지의 선정) ① (현
략)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이전후보지 선정을 심의하
	기 위하여는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결과 또
	는 유치동의 의견을 사전에 확
	인하여야 한다.
제8조(이전부지의 선정) ① ~ ③	제8조(이전부지의 선정)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국방부 장관은 이전부지 선	④ 국방부장관은
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u>한다.</u>	<u>하며, 종전부지 또는</u>
	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시 상호간 동등한 지위를 보장

제11조(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①국방부 장관과 종전부
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
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u>협의</u>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하고 합의에 의하여 이전부지
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11조(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①
<u>합의</u>
② ~ ④ (현행과 같음)